

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단의 선교정책을 세우고 변천하는 상황에서 선교 과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20인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1. 총회 안전심의부 선교부 부장
2. 신학자 1인
3. 목회자 5인(여성목회자 1인 이상 포함)
4. 도시빈민 목회자 1인
5. 농어촌 목회자 4인
6. 특수선교 목회자 3인
7. 여신도회 대표 2인
8. 남신도회 대표 2인
9. 부흥선교단 대표 1인

제4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7조 (소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전문인 약간 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회교육정책”과 “교단 장기발전계획 지침서” 중의 교회 선교정책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한다.
2. 오늘의 선교적 상황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위원회 산하에 ‘총회 부흥선교단’을 두어 교회 개척 및 부흥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4. 총회 위임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9조 (개척자립선교센터)

1. 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척자립선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개척자립선교센터는 별도의 규정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그 규정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개정 및 시행)

1.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시행)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이를 시행한다.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선교위원회 개척선교헌금(기장인 1인 1만원 헌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개척자립선교센터 활동 기금을 위한 개척선교헌금(기장인 1인 1만원 헌금)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마련)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개척선교헌금주일로 정하고 교단의 개척선교를 위해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개척선교헌금을 진행한다.

제3조 (사용방법)

본 헌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전액 교회개척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개척선교헌금 100%를 노회에서 관리하며, 각 노회는 교회개척을 위한 대지 또는 건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모금은 총회가 일괄 주관한다.
2. 노회에서는 총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대지구입비 혹은 건축비에 총회 기금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3. 총회와 노회의 합의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의 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척된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기념교회 제○호’라 칭한다(교회 이름은 노회에서 별도로 결정).

제4조 (관리)

1. 개척선교헌금은 노회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며, 매년 노회 시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2. 본 헌금은 전액 익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그 일부를 1년에 한해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노회 선정)

지원 노회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교회 개척, 건축을 위한 재원이 준비된 노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청원하면 선교위원회가 심의하고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원한다.

2. 건축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 노회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노회 선정 시 다음의 경우를 우선순위로 한다.
 - 1) 3만 호 이상 신규택지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1만 호 이상)
 - 2) 교단교회가 없는 시·군·구 지역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 3) 교세가 취약한 지역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 4) 일정 기간 교역자 생활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3. 기존 교회가 위 1), 2)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종교부지를 배정받았거나 그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 개척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정 및 시행)

1. 본 세칙의 개정은 선교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3000교회를 위한 비전2015운동본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3000교회를 위한 비전2015운동본부(약칭 '기장비전2015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본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며, 교인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이루어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교회 개척 및 성장 부흥을 위한 사업
2. 선교기초공동체 설립을 위한 지원 사업
3.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사업
4.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선교동참연대를 위한 지원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조직 및 회의

제5조 (조직)

본회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추진위원회
2. 본부장
3. 노회 비전2015운동본부

4. 사무국
5. 감사

제6조 (추진위원회)

총회총무, 총회선교위원장, 재정위원장, 각 신도회 총무, 각 노회 운동본부장, 전문위원 약간 등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소집)

추진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한 추진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 (임무)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활동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확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운동본부장)

본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운동본부장을 둔다. 운동본부장은 추진위원장이 겸임하며, 선교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0조(임기)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노회 비전2015운동본부)

1. 본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각 노회 별로 비전2015운동본부를 둔다.
2.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며 추진위원회 활동계획을 지원한다.

제12조(사무국)

1. 본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며 총회 비전2015부가 이 일을 담당한다.
2.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개척교회 지원부, 선교영역지원부,

미자립교회지원부, 평신도전도지원부, 재정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

- 1) 지원분과장은 추진위원 중에 하며 분과를 대표한다.
- 2) 분과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13조(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선교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사업과 재정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선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재 정

제14조(회계연도)

본 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제15조(재정)

본 운동본부 재정은 개척선교헌금 및 총회지원금, 사업 수입금, 후원금으로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및 준용

제16조(개정)

본회의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선교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 승인으로 개정한다.

제17조(준용)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규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회의 규정은 총회 의결을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